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7일, 이은미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은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 · 단체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 운영(안 제6조)
- 시설의 위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1부.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은미 의원
- 제안일자 : 2025. 5. 7.
- 회부일자 : 2025. 6. 9.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 · 단체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 운영(안 제6조)
- 시설의 위탁(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평창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신중년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사업 및 대상)에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추진 대상 사업과 지원 대상을 규정함.
- 안 제5조(재정지원 등)에서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내용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에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시설의 위탁)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임 관계 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 ·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임 입법례

□ 관내 1건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관외 54건]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425
----------	-----

발의 연월일 : 2025년 5월 7일
발의자 : 이은미 의원
찬성자 :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의원

1. 제안이유

우리군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 나.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단체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 라. 시설의 위탁(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4. 16. ~ 4. 24. 아래표 참고

조례안(의회안)	집행부 의견(경제과)	검토결과
<p>제4조(사업 및 대상)</p> <p>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p> <p>1. 교육관련 사업</p> <p>2. 취업지원 및 일자리 지원 사업</p> <p>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p> <p>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p> <p>5. 건강증진 지원 사업</p> <p>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다.</p>	<p>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한 의견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6조의 내용과 종복 입법으로 판단됨.</p> <p>「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p> <p>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p> <p>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p> <p>...</p> <p>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p> <p>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p> <p>....</p> <p>제4조 대한 사유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르면, 전연령</p>	<p>(불수용)</p> <p>1. 본 조례안 제정취지는 「<u>노후준비 지원법</u>」 제3조 “<u>지자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에 따른 법규상 자체 의무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함 (본 조례안은 은퇴전·후 중장년에 대한 인생준비,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와는 목적을 달리함)</p> <p>2. 안 제4조제1항제2호관련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사업’은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p>

	<p>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열된 각 목의 사업들도 개별 조례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어, 중복 입법으로 여겨짐.</p> <p>또한 2항에서 사업 대상을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차이점이 없음.</p> <p>또한 조례 제안이유의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가 있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제안하였는데,</p> <p>「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폐지 예정임.</p>	<p>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p> <p><u>제4조에 따라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 관련 일반조례라 할 수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특별규정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할 수 있음</u></p> <p>다만, 제2호 표현은 그 취지를 살려 구체화하여 표현하고자 함 (2. 취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사업)</p> <p>3. 또한,</p> <p><u>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외적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 연령이 변경된다 할 수 있지</u> 이 규정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의 일반적 조례인 「평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연령 대상과 같다 할 수 없음.</p>
--	--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 사업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 사업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연락처	(033) 330 -2503